

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536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함진규 · 정태옥 · 한선교
경대수 · 박찬우 · 성일종
강효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”로 규정되어 있으나, 「공유수면관리법」은 2010년에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.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따라서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15조제1항제8호).

법률 제 호

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8호 중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5조에”를 “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